



주요국의 사적연금 일시금에 대한 과세 강화와 시사점

강성호 연구위원, 안소영 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급을 유도하는 연금정책이 시행 중임. 이를 위해 선진국은 연금 수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일시금 수급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덴마크는 일시금에 대해 40% 정률세율을 부과하거나, 호주는 일정 이상의 일시금 수급액에 대해 최고세율로 과세하는 적정급여한도제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퇴직소득 일시금에 대해 공제수준을 낮추어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여유 세원은 연금화를 유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연금세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고령화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연금수급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급(연금화)하도록 하는 연금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이들의 기대여명도 증가하는 장수화로 인해 연금수요에 대한 욕구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음¹⁾
- 급여지급방식에 대한 법적 규제, 공적연금 존재여부, 금융회사의 마케팅, 사회관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연금지급 형태가 결정될 수 있으나²⁾ 대부분의 선진국은 연금형태로 수급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급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2015년부터 이연퇴직소득³⁾을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일시금 수급 시에 납부할 세액의 70%로 경감하는 정책을 시행함⁴⁾

1)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연금으로 조사되고 있음

2) Rocha et al.(2011), "Annuities and Other Retirement Products", World Bank;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 p. 74 재인용

3) 퇴직 시 바로 퇴직금을 수급하지 않고 연금수급 시점(예: 55세)까지 연기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이연한 퇴직소득을 의미함(소득세법 제146조); 이연퇴직소득의 대부분은 사업주부담분이라고 할 수 있음

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항 5의3호

■ 현실에서는 연금 보다는 일시금⁵⁾ 지급이 선호되는 연금퍼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방법으로 선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금세제 정책⁶⁾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연금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 퇴직소득세 체계 하에서 이연퇴직소득의 소득공제 효과가 커서 연금보다 일시금 선택을 선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⁷⁾
- MetLife(2017)⁸⁾에 의하면, 미국의 일시금 지급자 중 21%는 평균적으로 5.5년 만에 일시금 전부를 소진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시금 지급이 노후생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의 경우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연금지급이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금정책 방향은 연금화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 연금화를 강제화하는 방법으로 종신연금⁹⁾을 의무화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고 연금 수령을 의무화함¹⁰⁾
- Kling et al.(2014)¹¹⁾은 연금세제 혜택 확대 시 연금화 비중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연금세제 정책이 연금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임

■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정책으로 일시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이고 연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로 덴마크와 호주의 정책을 살펴볼 수 있음¹²⁾

- 덴마크는 1999년에 고소득층에 대한 일시금 세제혜택을 삭감하는 정책을 시행한바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집단의 일시금 지급에 대한 선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Chetty et al., 2013)¹³⁾
 - 덴마크의 경우 연금은 소득세 체계로 과세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부과되나,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40%의 정액세율이 부과됨
- 호주는 1990년대에 일시금 선택비율이 80%로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88년 이후 일정액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 시 초과금액에 대해 최고세율로 과세하는 적정급여한도제(Reasonable Benefit Limit)를 시행함으로써¹⁴⁾, 연금지급 비중을 확대한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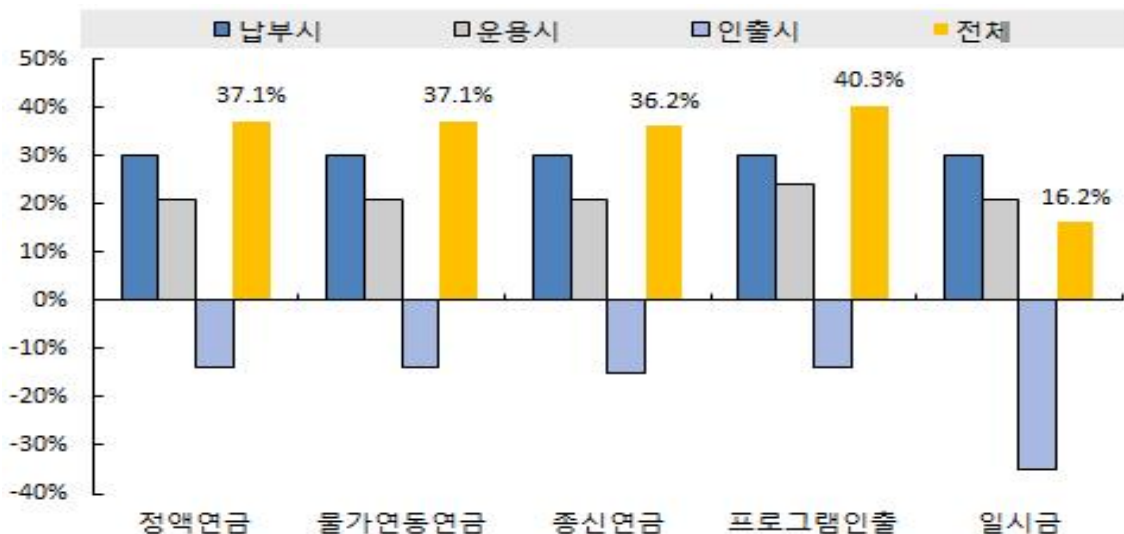
5) 이태열·류건식(2017), 「퇴직연금 일시금 인출의 원인과 개선방안」, 『KIRI 고령화리뷰』, Monthly 제5호, 보험연구원
 6) 일반적으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연금세제 정책이 활용됨;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
 7)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
 8) Metlife(2017), “Paycheck or Pot of Gold Study”, p. 6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일시금 선택자의 자산소진 현황을 조사함
 9) 각국의 사적연금 연금화 관련 내용은 Oxera. The Retirement Income Market, p. 19, p. 56; 류건식·김동겸(2015), 「OECD 국가의 퇴직금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테마진단, 보험연구원
 10) Oxera. The Retirement Income Market, p. 2; 류건식·김동겸(2015), 「OECD 국가의 퇴직금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 테마진단, 보험연구원
 11) Alexander Kling, Andreas Richter and Jochen Ruß(2014), “Annuitization Behavior: Tax Incentives vs. Product Design”, *Astin Bulletin*, 44(3), pp. 535~558
 12)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7),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보험연구원, p. 6
 13) R. Chetty, J. N. Friedman, S. Leth-Petersen, T. H. Nielsen, and T. Olsen(2013), “Subsidies vs. Nudges: Which Policies Increase Saving the Most?”, Center for Retirement Research at Boston College

- 2013년 이후 적정급여한도제에 따라 일시불은 562,195호주달러, 연금은 1,124,384호주달러로 연금수급이 약 2배 수준임¹⁵⁾

■ OECD에 의하면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수급유형별 연금세제 혜택을 살펴본 결과, 일시금 수급자는 과세액이 커 다른 수급유형에 비해 생애기간 연금세제 혜택은 가장 낮게 나타남

- 납부 시 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아래 그림의 '파랑색 막대')은 모든 유형에서 동일하게 30%를 받는 평균 소득자를 가정할 경우 운용 시 자산에 대한 세제혜택(아래 그림의 '회색 막대')은 프로그램인출형은 24.3%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다른 유형은 모두 21.1%)
- 이들의 인출 시 급여에 대한 과세(아래 그림의 0% 이하의 막대)는 일시금은 34.9%가 적용되고 다른 유형은 14% 수준으로 과세 되는 형태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납부에서 인출 시까지의 생애기간 동안의 연금세제 혜택(아래 그림의 '노랑 막대')은 일시금이 16.2%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EET형 연금 세제에서 평균소득자의 수급유형별 과세 수준 비교



주: 1) EET는 납부 및 운용 시 면세(Exempt), 급부 시 과세(Tax)된다는 의미임

2) 프로그램인출은 일시금 수급 후 일정 비율로 연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연금과 일시금 혼합 수급을 의미함

자료: OECD(2018), "Financial Incentives and Retirement Savings", p. 58

14) 류건식(2013), 「호주의 퇴직연금 세제개혁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15) 호주의 경우 급여 시 연금으로 수급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아 일시금 수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음

- 정리하면 해외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연금에 비해 일시금에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연금화를 유인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연금정책 방향도 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축소한 만큼 연금화로 유인하는 중립적 연금세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퇴직소득 일시금에 대한 공제수준을 낮추어 일시금 수급에 따른 퇴직소득세는 높이고 연금 수급 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연금화를 유인해 갈 필요가 있음 [kiri](#)